

2

V. 감사의견서

수협법 제73조 및 정관 제79조에 의거 조합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도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그 내용이 적정함을 인정합니다.

2024년 월 일

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

감사 김종우

